

##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및 친환경축산팀입니다.

내역사업명	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친환경농업 직접지불	농림축산식품부	친환경농업과	과장 양주필 사무관 강순례 주무관 신경미	044-201-2431 044-201-2439 044-201-2440
	시도	시도담당과	시도담당자	
	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	인증기관	인증담당자	
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	농림축산식품부	방역관리과	과장 박정훈 팀장 조정래 주무관 박정란	044-201-2371 044-201-2382 044-201-2374
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	농업경영정보과	과장 한종현 사무관 이광희	054-429-4071 054-429-4077
	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	인증기관	인증담당자	

### 제1편. 친환경농업직접지불

#### I. 사업개요

##### 1. 목적

-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,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

##### 2. 근거법령

- 「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제2항
-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」 제16조~제23조

##### 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2년까지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이후
합계	264,628	37,574	26,909	32,849	계속
국고	264,628	37,574	26,909	32,849	계속
지방비	-	-	-	-	-
융자	-	-	-	-	-
자부담	-	-	-	-	-

## II.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 1. 사업대상자

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  - \* 저농약인증의 경우 '10년 이전에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
-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

### 2. 지원대상

- 2015년 사업기간(1월~12월)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-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
  - 사업기간 중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
  -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(양액)재배, 버섯재배 필지 (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)
  -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, 시비 등 재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
  -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

### 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

### 4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- 자금재원 : 농특회계
- 지원형태 : 지자체 보조(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), 국고 100%
- 지급단가
  - 논 : 유기 600천원/ha, 무농약 400, 저농약 217
  - 밭 : 유기 1,200천원/ha, 무농약 1,000, 저농약 524
  - 유기지속직불 : 논 300천원/ha, 밭 600
  - \*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,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

## 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(경영체)당 지급한도 면적 : 0.1~5.0ha
  - \* 동일 농가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(5.0ha)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
- 지급 기간 및 방법 :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~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 3~5회만 지급)
  - 유기농산물 : 5년(5회), 무농약·저농약농산물 : 3년(3회)
    - \* '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
  -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,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,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. (단, 기존 인증단계(저농약, 무농약)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)
  - 신청기간 이후(당해년도 사업기간 중)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
  -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(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)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(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)
    - \* '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

## 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### 1. 사업신청단계

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,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 및 인증기관 등에 시달('14. 12월~'15. 1월)
-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('15. 1월~3월)
  - 홈페이지 안내, PCRM 발송 등

#### 시·도, 시·군·구(지자체)

- 시장, 군수,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('15. 1월~3월)
  -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, 게시판 공고(시·군·구, 읍·면·동), 반상회보 게재 등
  - \* '15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, 인증기관, 인증종류,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신청기관(읍·면·동)에 제출하도록 하고,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

## 사업대상자

### ○ 사업신청

-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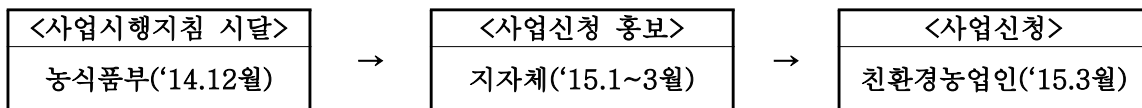
\* 신청서류 :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,  
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)

○ 신청기간 : '15. 3. 1 ~ 3. 31

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
- 신청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
\* 신청농지가 시·군·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.



\* '15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'16년에 사업신청 가능

## 2. 사업자 선정단계

### 가. 사업대상자 선정(시·군·구)

- 시장·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('15. 5. 10까지)
- 신청자격, 논밭구분, 인증단계별 지급단가, 농가당 지급한도, 지급기간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
- \* 읍·면·동 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, 인증필지·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

### 나. 신청내용 변경

#### ○ 변경대상

- (사업대상자 변경)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, 농지의 매도·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
- \*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
- (인증기관)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
- (인증종류)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(유기·무농약)가 변경된 경우

- (농지현황) 신청농지의 주소(지번)변경, 필지수·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 
인증서상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
- \* 인증대상자,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 
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
- 변경신청 기간 :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- 신청방법 : 해당 시·군·구청장(읍·면·동)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 
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
- \* 신청서류 :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[별지 제3호 서식],  
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

#### 다. 사업량 배정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 
(농림축산식품부 → 시·도, 5. 20까지)

#### 라.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(시·군·구)

-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(시·군·구 → 신청인 5. 31까지)
  - 시·군·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 
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[별지 제2호 서식]
  - \* 단,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

### 3. 이행점검 단계

- 시·군·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 「친환경농어업  
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 및 제40조의  
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
- 이행점검 요청(시·군·구 → 인증기관)
  - 시·군·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를 인증기관에 통보 후 이행  
점검을 요청('15. 5. 21까지)
- 이행점검 기간 : '15. 5. 21 ~ 11. 30.
- 점검내용 : 인증번호, 인증필지·면적 등 일치여부, 인증기준 준수 여부(현장조사),  
농업경영체등록 여부, 지급한도 초과 여부, 중복신청 여부 등
  - 인증기관에서는 「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
(농관원 고시)」 별표5(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)에 따라 최소한 연1회 생산  
과정조사를 실시
- 점검결과 통보(인증기관 → 시·군·구)
  -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시·군·구에 통보('15. 11. 30까지)

#### 4.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

##### 가.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(시·군·구)

- 시·군·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
  - 인증취소, 인증기간만료, 신청포기, 인증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(필지) 제외
-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('15. 12. 8까지)

##### 나.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(농림축산식품부 → 시·군·구)

-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('15. 12월)
- 각 시도(시·군·구)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('15. 12 ~ '16. 1월)

#### 5.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

##### 가. 사후관리

-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
  -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(1.1~12.31) 인증취소, 인증만료,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
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(11.30) 후에도 당해연도 말(12.31)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·군·구에 통보

##### 나. 제재

-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,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
-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(농특회계)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
  - 환수절차 : 반납고지서 발급(시·군·구) → 농업인 등 반납 → 시·군·구 계좌 → 시·도 계좌 → 농특회계 계좌(납입)
  - 각 시·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

#### IV.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##### 1.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- 2016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[별지 제1호 서식]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제출('16. 3. 1 ~ 3. 31)

[별표]

## 사업 추진체계

<세부계획>	<시기>	<주요내용>
① 지침시달 및 홍보	('14.12월 ~ '15. 3. 31)	·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(농식품부) ·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·홍보(시·군·구, 읍·면·동)
② 사업신청	(3. 1~3. 31)	·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(농지소재지 읍·면·동)
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	(4. 1~5. 10)	· 사업대상자 선정(시·군·구, 4.30) · 선정결과 보고(시·도 → 농식품부, 5.10)
④ 사업량 배정통보	(5. 11~5. 20)	· 시·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(농식품부, 5. 20) ·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(시·군·구 → 신청인, 5. 31까지)
⑤ 이행점검	(5. 21~11. 30)	·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(시·군·구담당자, 5. 21까지) ·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·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(읍면동담당자) ·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(인증기관 → 시·군·구, 11. 30까지)
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	(12. 1~12. 8)	·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(시·도 → 농식품부, 12.8까지)
⑦ 보조금 지급	(12. 9~'16. 1월)	· 소요예산액 교부(농식품부 → 시·도) · 보조금 지급(시·군·구 → 농업인, 12월~'16. 1월)

<하단 별표 참조>

### 제2편.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

#### I. 사업개요

##### 1. 목적

-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



추구하며,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

## 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-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(국내지원 정책의 시행)

## 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2년까지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이후
합 계	14,000	10,025	16,283	17,257	계속사업
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	14,000	10,025	16,283	17,257	계속사업

## II.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 1. 사업대상자

- 신청일 현재 『축산물위생관리법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『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
  - \* “농업인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.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
  -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

### 3.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

- 지원기준

-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,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,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, 유기는 5회, 무항생제는 3회만 지급)

○ 지급기간 산출방법

-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~5년간만 지급
-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~5년간만 지급
- 3~5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
- 가족이 3~5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

#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

#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- 자금재원 : 농특회계(농특세 사업계정)

- 지원형태 : 국고 보조 100%

- 지급대상 기간 : '14.11.1 ~ '15.10.31

- 동 기간동안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(유기·무항생제)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(정산서, 판매내역서 등)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
-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농촌진흥청,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함.

※ 종축, 종란(계란, 오리알, 메추리알)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

○ 지급단가

- 한우 : 유기 170,000원/마리, 무항생제 65,000원/마리
  - \* 육우는 한우의 50% 감액 지급
- 젖소(우유) : 유기 50원/L, 무항생제 10원/L (우유 1ℓ 는 1.03kg임)
- 돼지 : 유기 16,000원/마리, 무항생제 6,000원/마리

- 산란계(계란) : 유기 10원/개, 무항생제 1원/개
  - \* 다만,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출 서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
- 산출서식:  $\{(인증 마리수 \times 20개 \times 단가 \times 개월 수) - (입증량 \times 단가)\} \times 0.5$ 
  - 육계 : 유기 200원/마리, 무항생제 60원/마리(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% 증액 지급)
  - 오리 : 유기 400원/마리, 무항생제 120원/마리
  - 오리알 : 유기 20원/개, 무항생제 2원/개
  - 메추리알 : 무항생제 4원/10개 혹은 4원/100g
    - \* 다만,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출 서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
- 산출서식:  $\{(인증 마리수 \times 20개 \times 단가 \times 개월 수) - (입증량 \times 단가)\} \times 0.5$ 
  - 산양 : 무항생제 4,584원/두
  - 산양유 : 무항생제 34원/리터

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당 지급한도액 : (유기)30백만원/연간, (무항생제)20백만원/연간
  -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%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
- 지급 단위 : 천원(천원 단위 이하 절사)
- 지급 방법
  - '14.11.1~'15.10.31 실적 : 12월 지급
    - \* 다만, 산란계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 (1개월 미만은 제외)
  -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
  -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직불금 지급 신청 전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 종료될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
  -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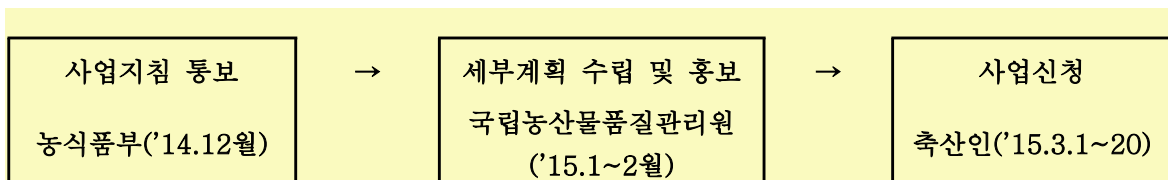
### 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#### 1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(유기·무항생제) 축산물의 생산·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,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#### 2. 사업신청단계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대상자에게 홍보 실시(1~2월)
-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·사무소로 신청서 제출(3.1~3.20.)
- 신청서 양식: 별지 서식 참조
  - [별지 제1호 서식]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
  - [별지 제2호 서식]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- 신청서 접수시 필요한 서류 :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(사무소장)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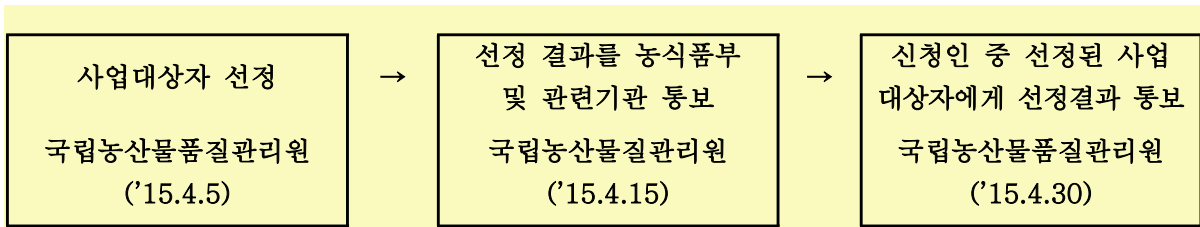
\*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

### 3. 사업자 선정단계

-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
- ① 유기축산농가
- ② 친환경 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 
(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)
- ③ '②'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
- ④ '②~③'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

-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·관리
-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상자 중에서 추가 선정
  -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



### 4. 자금배정단계

- 사업대상자는 [별지 제3호 서식]에 따라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자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·사무소로 신청(11.1~11.11)
  - 세금계산서 등 생산·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
    - \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에 따라, 불용 예산 발생 시 추가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하고, **추가 대상자**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자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·사무소로 신청(세금계산서 등 생산·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 요청(12.10)
- 농식품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(12.15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직불금 지급(12.20)
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·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

## 5. 이행점검단계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직불금 신청서, 자격요건 및 생산·판매실적 확인(11.11~12.10)

## 6. 사후관리단계

- 친환경 인증기관은 상반기 1회 사업신청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사후 관리 점검을 실시 후 그 점검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('15.7.30.)
  - \* 친환경 인증기관은 Agrix 시스템 입력을 통해 점검결과를 제출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반기 1회 사업신청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
- 농림축산검역본부,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지급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또는 농관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

### 《제재 및 처벌내용》

-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,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
- 사위(詐僞)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,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참여를 제한

## IV. 2016년도 사업신청 안내

### 1.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

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(2016.3월)